

ESG 공시 제도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미래전략개발부 지속가능연구팀
이 현 아 (leesoo85@kdb.co.kr)

- ◆ 정부는 '26.7월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이하 'ESG')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녹색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
- ◆ 기업의 준비 비용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시 제도화를 경영 전략과 내부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정부는 '26.7.8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ESG 공시 로드맵')」을 최종 발표

* 정부 단독 발표가 아닌 정부·여당 간 정책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공시 의무화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염두에 둔 절차임

-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
 - 이를 통해 공시 시기·대상·채널과 면책 방안, 제3자 인증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본시장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이행 체계를 구축
- 現 정부는 출범 이후 ESG 공시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정하여 적극 검토·추진해 왔으며, 지난 2.25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
-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수요와 기후·에너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는 당초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최종 발표
 - 정보 수요자인 글로벌 국부펀드·기관투자자 등은 '공시 예외 최소화, 재무 보고서와 동일 채널·시점 공시' 등 적극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

□ 당초 논의되던 거래소 공시 중심의 완만한 도입 계획에서 벗어나,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고 공시 대상도 확대하는 등 보다 강화된 형태로 최종안 확정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로, 허위·누락 시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 수반

-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인 주요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 로드맵을 적극 수정

ESG 공시 로드맵 주요 내용

구 분	최종안('26.7.8일 발표)	당초안('26.2.25일 발표)
시기·대상	'28년(FY 27 기준, 이하 동일)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실시 후 단계적 확대	30조원 이상(그 외 좌동)
종속회사	자산과 매출이 모두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첫해에 한해 연결공시 ^{주1} 대상에서 제외	좌동
내용·채널	기후공시 ^{주2} 부터 법정공시 의무화, 기후외 다른 ESG주제는 기업이 선택 공시	거래소 의무공시로 도입,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그 외 좌동)
면책 대상	도입 후 3년간 포괄 면책(고의적 그린워싱 제외), 이후에는 예측, 추정 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한해 합리적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적용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면책 도입 검토
Scope 3 공시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좌동

주1 : 지배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속회사의 기후위기·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등 중요 정보 포함 공시
주2 :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험·기회 관련 자산·사업활동의 규모·비용 등 기후변화가 기업에 가져오는 위험과 기회, 영향 등을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영역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6.7.8자),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 공시 대상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 대기업 등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공급망과 협력사까지 관련 데이터 요구가 확산될 예정
 - 특히 자산 또는 매출이 연결기준 10% 이상인 종속회사는 도입 첫해부터 연결 공시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배기업은 대상 종속회사를 미리 파악하고 회사별 ESG 정보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정해둘 필요

ESG 공시 포함 기업 수

(단위 : 개사)

구 분	'28년 공시(FY27)	'29년 공시(FY28)	'30년 공시(FY29)
기준(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2조원 이상(확대 검토)
공 시 대 상(A)	107	157	259
종 속 회 사(B)	184	3,014	3,490
합 계(C=A+B)	291	3,171	3,749

주 : 공시대상은 '26년(FY25) 자산·매출액 기준 추정치로 실제 공시 시점에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6.7.8자),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중 p.3 '공시 포함 기업수'

- 기후공시는 도입 첫해부터 법정공시 형태로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제2의 재무제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
 - 기후공시가 재무공시와 같은 사업보고서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데이터 산출·검증과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등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사전 구축이 필요
 - * 기존에는 ESG 경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형태로 공시

- 3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진 포괄면책 기간과 Scope 3 공시 유예기간을 요건에 부합하는 내부 체계를 구축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기후 관련 정보는 예측치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 만큼 추정의 근거와 가정, 정보의 출처 및 불확실성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기록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
 - Scope 3 공시의 경우 단기간에 공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영역임을 감안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공시 대상 제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추후 확정 예정,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EU CBAM 대상 6개 업종 참고 가능)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분

구분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간접배출)
의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직접 발생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에너지에서 발생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
예시	공장 보일러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CO ₂ , 회사 보유 차량의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	구매한 전기·열·스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협력사 생산, 원재료 운송, 출장·통근, 판매 제품 사용·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
비고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기업의 최우선 감축 대상	재생에너지 조달 및 효율화로 감축 가능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자료 : WRI-WBCSD(2004-2011)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Scope 3 Standard"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 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단기적 비용 부담을 수반하나,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 노력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번 공시 제도화 방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높이는 계기로 평가되나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
 - 특히 전담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협력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업이 ESG 정보를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공시 의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가능
 - 신뢰도 높은 ESG 정보는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판단과 녹색·전환금융 조달 여건에 직결되는 만큼, 공시 역량이 곧 자금조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 투자·공급망·R&D·사업 전략에 반영한다면 ESG 공시는 기업의 경영혁신을 견인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될 것